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4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신동윤 의원, 신달호 의원

## 1. 제안이유

달성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취약지역 지정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부 지역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약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요건 완화를 위한 지정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행복택시 이용자 부담금 완화(안 제5조제4항)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 또는 운행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 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을 교부하고 동승 인원의 유무, 그 수를 불문하고 이용 회당 1,000원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란 시내 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한 자연부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p> <p><u>&lt;신 설&gt;</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 또는 운행 시내버스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p> <p>2. ~ 6. (생략)</p> <p>제5조(운행방법) ① ~ ③(생략)</p> <p>④ 행복택시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시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제6조에 따른 <u>이용권 교부와 동시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일반인 기준 운임 범위 내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u></p> <p>⑤ ~ ⑥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 또는 운행 시내버스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행방법)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 ----- -----<u>이용권을 교부하고 동승 인원의 유무, 그 수를 불문하고 이용 회당 1,000원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5.12.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농촌형 교통모델(달성행복택시) 사업
- 나. 지원목적: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사람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
- 다. 대상지역: 8개 읍·면 49개 마을
- 라. 소요예산: 연간 700백만 원(국 300, 시 100, 군 300)
- 마. 이용방법: 전화 예약 후 이용권 제시 및 주민부담금(1,700원) 지불

### 2. 재정수반요인

- 행복택시 대상 마을 증가 및 주민부담금 변동

###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 연 평균 이용권 사용횟수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행보조금 지급액을 참고하여 산출 기초 작성
- 나. 추계 결과: 288,750천원 정도(본 예산 700,000천원)
  - 취약지역에 대한 기준 완화시 18개 마을 추가 지정(예측)
  - 2026년 6월부터 확대 운행
  - 추가 지정 마을 월 평균 이용권 5,500매, 보조금 7,500원/회 지급 추정
  - 산출기초: 2026년 5,500매정도 \* 7개월 \* 7,500원정도= 288,750천원정도
- 다. 재원조달방안: 군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988,75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788,750
보조 금	국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시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군비	588,75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788,750
세 출		988,75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788,750
운수업계 보조금		988,75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788,750
재원 조달		988,75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788,750
의존 재원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보조금 (국비,시비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군비		588,75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788,750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곽 동 환 (☎ 2057)